# 위탁자산 리스크관리 시행세칙

제 정 2006. 11. 9 개 정(1) 2009. 10. 13 개 정(2) 2011. 9. 27 개 정(3) 2014. 5. 30 개 정(4) 2016. 9. 28 개 정(5) 2020. 4. 21 개 정(6) 2020. 9. 29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리스크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탁자 산운용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벤치마크"라 함은 위탁자산의 투자 및 성과평가시 적용되는 통화 및 만기 별/섹터별 구성기준 등을 말한다.
- ② "성과분석"이라 함은 위탁자산의 운용에 따른 성과를 측정하고 그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시가평가"라 함은 유통시장에서 투자가들에 의해 형성되고 있는 시장가격에 따라 또는 해당종목에 대한 정확한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객관적 기준으로 인정한 방법에 따라 자산을 평가함을 말한다.
- ④ "운용한도"라 함은 투자운용담당부서 및 운용담당자에게 주어진 투자한도를 말하며 현물유가증권(주식, 채권 등) 및 부동산투자에서는 투자금액을, 선물환거 래 등의 파생상품 거래에서는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 ⑤ "리스크 허용한도"라 함은 운용에 따른 잠재적 손실위험을 적정수준 이내로 유지하기 위하여 자산 및 투자운용담당부서별로 부담가능한 리스크총량 으로서 운용한도, 변동성, 민감도 등의 최대한도를 정한 것을 말한다.
- ⑥ "손실한도"라 함은 리스크 증가로 인한 잠재적손실의 확대를 예방하여 투자이익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자산에 허용된 최대한의 손실 허용수준을 말한다.

- 제3조(운용대상 자산) 공사의 운용자산은 공사법에서 규정하였거나 위탁자가 가이 드라인에서 지정한 국가, 통화, 자산종류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전통투자 투자관리) ①공사의 채권, 주식 및 원자재운용 부서에서 직접 운용하는 경우, 투자기획담당부서가 별도의 투자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리스크관리담당부서 및 준법감시담당부서의 서면합의를 받아야 한다.
  - ②전통자산 간접운용 계약 체결시에는 리스크관리담당부서의 서면합의를 받아야한다.
  - ③투자운용담당부서, 리스크관리담당부서, 운용지원담당부서 및 준법감시담당부서는 간접운용자산과 직접운용자산의 통합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내부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대체자산 투자관리)** ①대체투자운용담당부서는 대체투자 관련 계약의 준수 여부 및 투자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 확인해야 한다.
  - ②대체투자운용담당부서는 직접투자건, 간접투자건, 공동투자건에 대해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명시된 사항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리스크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신상품 투자) ①신상품 투자시에는 투자여부 및 평가방식 등에 대하여 리스 크관리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전문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한다.
  - ②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에서 합의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투자 가능여부를 결정한다.
  - ③신상품은 거래 경험이 없는 복합장외파생상품 또는 신규 투자전략 및 투자구조 등과 같이 내재 리스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상품 및 전략을 의미한다.

### 제2장 리스크 관리 절차

- **제7조(리스크허용한도의 설정 및 관리)**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탁자산별 총리스크 허용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한다.
- 제8조(리스크의 측정) ①리스크를 측정함에 있어 계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시장

데이터 및 과학적인 방법론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②리스크모형을 사용하는 경우, 추정된 리스크와 실제 리스크와의 괴리를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추정하여야 한다.

- 제9조(리스크인식 및 측정결과 등의 보고) ①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리스크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투자관리부문장에게 보고하고 그 기록을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 1. 운용현황 및 자산 변동 사항
  - 2. 제 규정의 준수 여부 점검 결과
  - 3. 보유자산의 급격한 신용리스크 변화시 이에 대한 현황
  - 4. 그 밖에 리스크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 ②투자관리부문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결과 및 각종 한도 등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리스크관리가이드라인」위반시 조치사항) ①「리스크관리가이드라인」중 위탁기관이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사장에게 보고하고 즉시 시정한다. 다만, 즉시 시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② 「리스크관리가이드라인」 중 공사 자체적으로 정한 가이드라인 위반시에는 투자관리부문장에게 보고하고 시정한다.

## 제3장 시장리스크 관리

- 제11조(적용대상) 시장리스크 관리대상은 시장가격요인(금리, 주가, 환율 등)에 의해 자산가치가 변동하는 다음 각호를 대상으로 한다.
  - 1. 유가증권
  - 2. 확 포지션
  - 3. 파생금융상품
  - 4. 기타 시장리스크에 노출되어 관리 필요성이 있는 자산
- 제12조(관리방법) ①제11조 각호의 자산은 운용목적 및 거래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②위탁기관이 벤치마크를 제시할 경우, 사전적 추적오차를 측정하여 관리한다.
  - ③위탁자산의 최대손실가능규모(VaR), 민감도(듀레이션 등) 한도, 자산별 투자한

도 등을 적용하여 시장리스크를 관리한다.

④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정기적으로 시장리스크량을 측정하고 한도초과시 투자 운용담당부서와 리스크관리담당부서가 시장리스크 감축계획을 협의한다.

제13조(평가 및 평가손익의 계산) ①보유자산의 평가는 일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일평가가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주기를 정하여 평가손익을 정할 수 있다.

②제11조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시가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가평가가 곤란할 경우 위탁자산 평가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제14조(운용 및 손실한도의 설정) ①운용 및 손실한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설정한다.

- 1. 자산운용 수익목표와 자산별 운용비중
- 2. 각 자산별 시장리스크 요인
- 3. 과거의 운용성과
- 4. 운용담당자 또는 위탁운용사의 운용경험 및 전문성
- ②손실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에 동사실을 보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 제4장 신용리스크 관리

- 제15조(신용등급의 적용) ①신용등급은 S&P와 Moody's 및 Fitch(이하 "신용평가 기관"이라 한다)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른다.
  - ②제1항의 신용평가기관중 한 개 기관만이 신용등급을 평가한 경우에는 동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을, 두개의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이중 낮은 신용등급을, 3개의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등급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중간 신용등급을 적용한다. 단, 위탁자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이 있을 경우그 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 제16조(신용리스크관리) ①신용리스크 관리대상 자산은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변화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채권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 1. 투자대상국가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채권

- 2. 세계은행 또는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가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채권 ②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투자기업의 부도 및 신용상태 악화에 따른 손실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1. 보유유가증권의 신용상태 등 리스크요인 분석
- 2. 위탁운용자산의 부실채권 보유내역 및 처리방안
- 3. 그 밖에 신용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③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현물보유금액과 장외파생 금융거래의 익스포져를 합산하여 거래상대방별 한도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④신용평가등급으로 기준을 정한 위탁자산 거래가 거래일 이후에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투자운용담당부서는 정해진 기간이내에 처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투자운용담당부서가 처분유예를 요청하는 경우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에서 계속 보유여부를 논의하도록 한다.
- ⑤위탁자산의 거래시 국가별 또는 지역별 집중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위탁기관 별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에서 기준을 수립하여 관리한다.
- 제17조(투자대상의 신용등급) ①투자하는 채권의 장기신용등급 및 단기신용등급 제한은 위탁자가 정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사 자체적으로 이보다 보수적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 ②보증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과 발행기관의 신용등급 중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단, 보증만기가 보증채권의 만기보다 원칙적으로 같거나 길도록해야 하며, 보증만기가 채권의 만기보다 짧은 경우의 잔여리스크에 대해서는 미보증 채권에 대한 신용리스크 관리방법을 따른다
  - ③신용등급은 채권에 부여된 신용등급을 원칙으로 한다.
- 제18조(신용등급별 투자한도) ①동 시행세칙 제16조 제1항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은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제3조에서 정한 투자대상국가(통화)의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은 「리스크관리가이드라인」에서 정한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 제5장 파생상품리스크 관리

- 제19조(적용범위) 파생상품리스크관리는 이자율, 주가, 환율, 신용,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선도계약, 스왑, 옵션 및 이와 관련된 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 제20조(운용한도 및 운용제한) 파생상품의 운용은 파생상품의 현재 및 잠재적 익 스포져를 합하여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제21조(보유비중제한) ①파생상품의 순포지션 명목금액은 위탁자별 자산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헤지펀드투자와 같은 대체투자의 경우는 이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 ②투자운용담당부서가 보유비중한도에 대한 예외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리스 크관리담당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포트폴리오 구축 또는 환매기간 동안에는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 제22조(옵션거래의 리스크관리) ①옵션거래를 하는 경우 각 투자운용담당부서와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리한다.
  - 1. 기초자산의 가격변화에 대한 옵션포지션의 기대손익이 감소하는 리스크("델타(Delta) 리스크"라 한다)
  - 2. 그 밖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옵션 관련 리스크
- 제23조(청산거래 원칙 등) ①기보유 포지션(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선물 등의 매입액에서 매도액을 차감한 것)과 동일한 기초자산, 만기월, 실행가격을 가진 선물 및 옵션 등을 기보유 포지션과 반대방향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동평균법에 의해 기보유 포지션에 대한 청산거래를 사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단, 외부자산운용사를 이용한 간접투자의 경우에는 동 세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운용지원담당부서는 당일의 거래를 집계하여 2영업일 이내에 거래선으로부터 접수한 거래내역서와 대조한 후, 리스크관리담당부서에 통보한다. 이때 계약서의 내용이 거래내역서와 다를 경우 그 내용을 거래담당자에게 확인한 후 리스크 관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장 운영/법률 리스크 관리

제24조(운영리스크의 관리) ①운영리스크는 위탁자산운용과 이에 관련된 업무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 ②운영리스크 관리는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담당부서가 제반 실무를 담당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다.
- 1. 업무 매뉴얼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업무
- 2. 위탁자산의 운용ㆍ결제 및 회계처리 프로세스의 점검
- 3. 사무처리담당자의 업무지침 등의 이행여부 점검 및 보고
- 4. 운영리스크와 관련된 각종 분석 및 보고
- 5. 운영리스크에 관한 사안의 리스크관리 관련 각종 위원회 보고 및 부의
- 제25조(법률리스크 관리) ①법률리스크는 투자관련 계약 등의 문서와 관련된 업무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 ②법률리스크 관리는 준법감시 및 법무담당부서가 제반실무를 담당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1. 위탁자산에 대한 법규 및 계약 위배 사전관리 및 사후관리
  - 2. 위탁자산의 운용과 관련한 계약서의 점검
  - 3. 운용담당자의 법규, 계약의 이행여부 점검 및 보고
  - 4. 법률리스크와 관련된 각종 분석 및 보고
  - 5. 법률리스크에 관한 사안의 리스크관리 관련 각종 위원회 보고 및 부의

#### 제7장 자산운용 성과평가

- 제26조(평가원칙) ①자산운용 성과는 자산운용에 있어 자산배분으로부터 개별 투자에 이르기까지 부여된 의사결정 권한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②운용성과의 평가시에는 실현된 벤치마크지수와 비교·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리스크를 고려한 성과측정 및 평가를 병행한다.
- 제27조(평가방법) ①전체 자산운용 성과는 실현된 성과를 벤치마크지수 또는 목표 수익률과 대비하여 평가한다.
  - ②자산운용성과의 평가는 1년을 주기로 하되 3년 이상의 장기적 평가도 병행한다. 다만, 연간 평가와는 별도로 반기 평가 등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28조(수익률의 산출) ①자산운용성과의 평가에 사용되는 수익률은 순자산가치가 반영되는 시가수익률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때 "수익"이라 함은 "실현되거나 미실현된 이익과 소득을 포함한 총수익"을 말한다.

- ②운용수익률은 월간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수익률은 현금흐름이 반영된 시간가중수익률을 사용하며, 거래비용을 제외한 후 수익률을 계산하여야 한다. 단, 대체투자 등 시간가중수 익률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내부투자수익률(IRR)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④대외적으로 공표한 연간단위 수익률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사장에게 보고 후 수정 하여야 한다.

#### 부 칙(제정)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200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1)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2009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2011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3)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201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4)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5)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202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6)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2020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